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 가 일본

원 법 률 명 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제 정 2004.06.04 法律 第81号

개 정 2017.06.23 法律 第73号

수록자료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pp.1-12

발 행 사 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20

이 번역문은 외국 법률의 해석이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 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平成十六年六月四日)

(法律第八十一号)

改正 平成二九年 六月二三日同 第七三号

第一章 総則

第一条(目的)

この法律は、知的財産基本法(平成十四年法律第百二十二号)の基本理念にのっとり、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関し、基本理念を定め、並びに国、地方公共団体及びコンテンツ制作等を行う者の責務等を明らかにするとともに、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関する施策の基本となる事項並びにコンテンツ事業の振興に必要な事項を定めること等により、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関する施策を総合的かつ効果的に推進し、もって国民生活の向上及び国民経済の健全な発展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第二条(定義)

この法律において「コンテンツ」とは、映画、音楽、演劇、文芸、写真、漫画、アニメーション、コンピュータゲームその他の文字、図形、色彩、音声、動作若しくは映像若しくはこれらを組み合わせたもの又はこれらに係る情報を電子計算機を介して提供するためのプログラム(電子計算機に対する指令であって、一の結果を得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組み合わせたものをいう。)であって、人間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

(2004년 6월 4일)

(법률 제81호)

개정 2017년 6월 23일 법률 제7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지적재산기본법」(2002년 법률 제122호)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콘텐츠 제작 등을 하는 자의 책무 등을 분명히 하며,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촉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및콘텐츠 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등에 의하여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 및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률에서 "콘텐츠"란 영화, 음악, 연극, 문예,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 컴퓨터게임 및 그 밖의 문자, 도형, 색채, 음성, 동작 또는 영상이나 이들을 조합한 것 또는이들과 관련된 정보를 컴퓨터를 통하여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컴퓨터에 대한 지령으로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합한 것을 말한다)으로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하여 만들어내는 것 중 교양 또는 오락의

の創造的活動により生み出されるもののう ち、教養又は娯楽の範囲に属するものをい う。

2 この法律において「コンテンツ制作等」と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行為をいう。

一 コンテンツの制作

二 コンテンツの複製、上映、公演、公衆送信その他の利用(コンテンツの複製物の譲渡、貸与及び展示を含む。)

三 コンテンツに係る知的財産権(知的財産基本法第二条第二項に規定する知的財産権をいう。以下同じ。)の管理

3 この法律において「コンテンツ事業」とは、コンテンツ制作等を業として行うことをいい、「コンテンツ事業者」とは、コンテンツ事業を主たる事業として行う者をいう。

第三条(基本理念)

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関する施策の推進は、情報記録物、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その他の手段を介して提供されるコンテンツが国民の生活に豊かさと潤いを与えるものであり、かつ、海外における我が国の文化等に対する理解の増進に資するものであることにかんがみ、コンテンツの制作者の創造性が十分に発揮されること、コンテンツの円滑な流通が促進されること、コンテンツの円滑な流通が促進されること等を通じて、コンテンツの恵沢を享受し、文化的活動を行う機会の拡大等が図られ、もって国民生活の向上に寄与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률에서 "콘텐츠 제작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 다.

1. 콘텐츠의 제작

2. 콘텐츠의 복제, 상영, 공연, 공중송신 및 그 밖의 이용(콘텐츠 복제물의 양도, 대여 및 전시를 포함한다)

3. 콘텐츠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지적재산 기본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적재 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

③ 이 법률에서 "콘텐츠 사업"이란 콘텐츠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콘텐츠 사업자"란 콘텐츠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의 추진은 정보기록물,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 및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제공되는 콘텐츠가 국민의 생활을 풍부하고 윤택하게 하고, 해외에서 일본 문화 등에대한 이해의 증진에 기여함에 비추어 콘텐츠 제작자의 창조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콘텐츠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이 국내외에서 적정하게 보호되며,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이촉진되는 것 등을 통하여 콘텐츠의 혜택을향유하고, 문화적 활동을 할 기회의 확대등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의 창조에 이바지

し、あわせて多様な文化の創造に資すること を基本として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 に関する施策の推進は、コンテンツ事業が将 来において成長発展が期待される分野の事業 であることにかんがみ、コンテンツ事業者の 自律的発展が促されること等を通じて、多様 なコンテンツ事業の創出及び健全な発展、コ ンテンツ事業の効率化及び高度化並びに国際 競争力の強化等が図られ、もって経済社会の 活力の向上及び持続的な発展に寄与すること を基本として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3 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 に関する施策の推進は、高度情報通信ネット ワーク社会形成基本法(平成十二年法律第百 四十四号)、文化芸術基本法(平成十三年法律 第百四十八号)及び消費者基本法(昭和四十三 年法律第七十八号)の基本理念に配慮して行 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条(国の責務)

国は、前条の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ついての基本理念(以下「基本理念」という。)にのっとり、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関する施策を策定し、及び実施する責務を有する。

第五条(地方公共団体の責務)

地方公共団体は、基本理念にのっとり、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関し、 国との適切な役割分担を踏まえて、その地方 公共団体の区域の特性を生かした自主的な施 策を策定し、及び実施する責務を有する。 함을 기본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의 추진은 콘텐츠 사업이 미래에 성장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의 사업임에 비추어콘텐츠 사업자의 자율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 등을 통하여 다양한 콘텐츠 사업의 창출및 건전한 발전, 콘텐츠 사업의 효율화 및고도화, 국제경쟁력의 강화 등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사회의 활력 향상 및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기본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의 추진은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형성기본법」(2000년 법률 제144호), 「문화예술기본법」(2001년 법률 제148호)및 「소비자기본법」(1968년 법률 제78호)의 기본이념을 배려하여 실시하여야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전조의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이념(이하 "기본이념"이라 한다)에 입각하여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책정하고실시할 책무를 진다.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국가와의 적절한 분할 분담을 바탕으로 지 방공공단체의 구역 특성을 살린 자주적인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진다.

第六条(コンテンツ制作等を行う者の責務)

コンテンツ制作等を行う者は、コンテンツに 係る知的財産権に関し知識と理解を深めるこ と等を通じて、そのコンテンツ制作等に当た っては、これを尊重す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 る。

2 コンテンツ制作等を行う者は、そのコンテンツ制作等に当たっては、コンテンツが青少年等に及ぼす影響について十分配慮す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

第七条(連携の強化)

国は、国、地方公共団体及びコンテンツ制作等に関係する者が相互に連携を図りながら協力することにより、コンテンツの効果的な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が図られることにかんがみ、これらの者の間の連携の強化に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第八条(法制上の措置等)

政府は、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 促進に関する施策を実施するため必要な法制 上、財政上又は金融上の措置その他の措置を 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章 基本的施策

第九条(人材の育成等)

国は、魅力あるコンテンツを生み出し、又はそれを有効に活用することができる人材の育成、資質の向上及び確保を図るため、高等教育を行う機関によるコンテンツ制作等に関する教育の振興、国内外のコンテンツ制作等を行う者の相互の交流の促進、コンテンツの展

제6조(콘텐츠 제작 등을 하는 자의 책무)

① 콘텐츠 제작 등을 하는 자는 콘텐츠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지식과 이해를 높이는 것 등을 통하여 콘텐츠 제작 등을 할 때는 이를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② 콘텐츠 제작 등을 하는 자는 콘텐츠 제 작 등을 할 때는 콘텐츠가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노력한 다.

제7조(연계의 강화)

국가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콘텐츠 제작 등과 관련된 자가 상호 연계를 도모하면서 협력함으로써 콘텐츠의 효과적인 창조, 보 호 및 활용 촉진이 도모됨에 비추어 이러한 자의 연계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8조(법제상의 조치 등)

정부는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또는 금융상의 조치 및 그 밖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적 시책

제9조(인재의 육성 등)

국가는 매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거나 그것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 자질의 향상 및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콘텐츠 제작 등에 관한 교육의 진흥, 국내외 콘텐츠 제작 등을 하는 자의 상호교류 촉진, 콘텐츠의

示会又は品評会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ものの 開催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 る。

第十条(先端的な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 進等)

国は、映像の制作、上映又は送受信等の分野における技術革新の進展に即応した高度な技術を用いた良質なコンテンツが生み出されるよう、先端的な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及び教育の振興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第十一条(コンテンツに係る知的財産権の適正な保護)

国は、インターネットの普及その他社会経済 情勢の変化に伴うコンテンツの利用方法の多 様化に的確に対応したコンテンツに係る知的 財産権の適正な保護が図られるよう、コンテ ンツの公正な利用に配慮しつつ、権利の内容 の見直し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 する。

第十二条(円滑な流通の促進等)

国は、インターネットその他の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の利便性が向上し、並びにその安全性及び信頼性が確保されることにより、多様な手段を活用したコンテンツの円滑な流通が促進されるよう、インターネット等に関する技術的保護手段、インターネットにおいて高速度でかつ安定的な電気通信を可能とする技術その他のコンテンツの流通に係る技術の開発及び利用に対する支援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

전시회 또는 품평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개최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다.

제10조(첨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 등)

국가는 영상의 제작, 상영 또는 송수신 등의 분야에서 기술혁신의 진전에 발맞춰 고도 기술을 이용한 양질의 콘텐츠가 만들어지도록 첨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 교육의 진흥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1조(콘텐츠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적정한 보호)

국가는 인터넷의 보급 및 그 밖에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콘텐츠 이용방법의 다 양화에 정확하게 대응한 콘텐츠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도록 콘 텐츠의 공정한 이용을 고려하고, 권리내용 의 재검토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한다.

제12조(원활한 유통의 촉진 등)

① 국가는 인터넷 및 그 밖의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의 편리성이 향상되고,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됨으로써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이 촉진되도록 인터넷 등에 의하여 제공되는 콘텐츠와 관련된 인증기술, 인터넷 등에 관한 기술적 보호수단, 인터넷에서 고속의 안정적인 전기통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및 그 밖의콘텐츠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지원,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강

る。

2 国は、コンテンツの利用の円滑化を図るため、個人及び法人の権利利益の保護に配慮しつつ、コンテンツに係る知的財産権を有する者に関する情報、コンテンツの内容に関する情報等に係るデータベースの整備に対する支援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第十三条(適切な保存の促進等)

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インターネットその 他の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の利用を通じ てコンテンツが適切かつ有効に発信されるよ う、コンテンツの制作、収集、保存若しくは 発信又は既存のコンテンツのデジタル化を行 う体制の整備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 のとする。

第十四条(活用の機会等の格差の是正)

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広く国民がコンテンツの恵沢を享受できるよう、年齢、身体的な条件その他の要因に基づくコンテンツの活用の機会又は活用のための能力における格差の是正を図るために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第十五条(個性豊かな地域社会の実現)

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地域の特性を生かした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を通じて個性豊かで活力に満ちた地域社会が実現されるよう、地域の魅力あるコンテンツを生み出すための活動に対する支援、地域における映画等のコンテンツの制作の円滑化を図るための活動に対する支援その他の必要な施

구한다.

② 국가는 콘텐츠 이용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이익 보호를 배려하고, 콘텐츠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가진 자에 관한 정보, 콘텐츠의 내용에 관한 정보 등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의 정비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3조(적절한 보존의 촉진 등)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인터넷 및 그 밖의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이용을 통하여 콘텐츠가 적절하고 유효하게 발신되도록 콘텐츠의 제작, 수집, 보존이나 발신 또는 기존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실시하는 체제의 정비및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4조(활용 기회 등의 격차 시정)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국민이 콘텐츠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연령, 신체적인 조건 및 그 밖의 요인에 따른 콘텐츠의 활용 기회 또는 활용을 위한 능력에 있어서 격차의 시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5조(개성이 풍부한 지역사회의 실현)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지역의 특성을 살 린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을 통 하여 개성이 풍부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 사회를 실현하도록 지역의 매력 있는 콘텐 츠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대한 지원, 지역 의 영화 등 콘텐츠 제작의 원활화를 도모하 기 위한 활동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의 필요 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第十六条(国民の理解及び関心の増進)

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コンテンツの創造、 保護及び活用の促進並びにこれらにおいてコ ンテンツの制作者が果たす役割の重要性に関 する国民の理解と関心を深めるよう、コンテ ンツに関する広報活動の充実及び教育の振興 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第三章 コンテンツ事業の振興に必要 な施策等

第十七条(多様な方法により資金調達を図るための制度の構築)

国は、コンテンツ事業者のうちコンテンツの制作を業として行うもの(以下「制作事業者」という。)がコンテンツの制作に必要な資金を円滑に調達することが困難であることにかんがみ、制作事業者がその資金を安定的に調達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多様な方法により資金調達を図るための制度の構築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第十八条(権利侵害への措置)

国は、国内外におけるコンテンツの違法な複製その他のコンテンツに係る知的財産権を侵害する行為について、コンテンツ事業者の利益が適正に確保されるよう、コンテンツ事業者又は関係団体との緊密な連携協力体制の下、コンテンツに係る知的財産権を侵害する事犯の取締り、海外におけるコンテンツに係る知的財産権の侵害に対処するための体制の整備その他の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

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6조(국민의 이해 및 관심의 증진)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과 이에 대하여 콘텐츠 제작자가 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관한 국민의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콘텐츠에 관한 홍보활동의 강화, 교육의 진흥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3장 콘텐츠 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 등

제17조(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국가는 콘텐츠 사업자 중 콘텐츠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작사업자"라 한다)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가 곤란함에 비추어 제작사업자가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의구축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8조(권리침해에 대한 조치)

국가는 국내외에서 콘텐츠의 위법한 복제 및 그 밖의 콘텐츠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콘텐츠 사업자의 이익이 적정하게 확보되도록 콘텐츠 사업자 또는 관계 단체와의 긴밀한 연계협력체제 하에서 콘텐츠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침해 하는 사범의 단속, 해외에서 콘텐츠와 관련 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체 제의 정비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 る。

第十九条(海外における事業展開の促進)

国は、コンテンツ事業の事業規模の拡大を図るとともに、海外における我が国のコンテンツの普及を通じて我が国の文化等に対する理解の増進を図ることができるよう、我が国の魅力あるコンテンツの海外への紹介、コンテンツの取引の活性化を図るための国際的な催しの実施又はこれへの参加に対する支援、コンテンツに係る海外市場に関する情報の収集及び提供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第二十条(公正な取引関係の構築)

国は、制作事業者の大部分が中小企業者によって占められており、かつ、その業務の大部分が受託又は請負により行われていることにかんがみ、コンテンツの制作を委託し、又は請け負わせる者との公正な取引関係が構築されることにより制作事業者の利益が適正に確保されるよう、取引に関する指針の策定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第二十一条(中小企業者等への配慮)

国は、コンテンツ事業の振興に関する施策を 講ずるに当たっては、コンテンツ事業の成長 発展において中小企業者が果たす役割の重要 性にかんがみ、中小企業者によるコンテンツ 事業の円滑な実施が図られるよう特別の配慮 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国は、コンテンツ事業の振興に関する施 策を講ずるに当たっては、消費者の利益の擁 護及び増進が図られるよう配慮をしなければ 한다.

제19조(해외에서의 사업전개 촉진)

국가는 콘텐츠 사업의 사업규모 확대를 도 모하고, 해외에서 일본 콘텐츠의 보급을 통 하여 일본 문화 등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본의 매력 있는 콘텐츠 의 해외 소개, 콘텐츠 거래의 활성화를 도 모하기 위한 국제적인 행사의 실시 또는 참 가에 대한 지원, 콘텐츠와 관련된 해외시장 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그 밖의 필 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20조(공정한 거래관계의 구축)

국가는 제작사업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이며, 업무의 대부분이 수탁 또는 도급으로 실시되고 있음에 비추어 콘텐츠의 제작을 위탁하거나 도급하는 자와의 공정한 거래관계가 구축됨으로써 제작사업자의 이익이 적정하게 확보되도록 거래에 관한 지침의 책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21조(중소기업인 등에 대한 배려)

- ① 국가는 콘텐츠 사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때는 콘텐츠 사업의 성장발전에 있어서 중소기업인이 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중소기업인에 의한 콘텐츠 사업의 원활한 실시가 도모되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콘텐츠 사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때는 소비자 이익의 옹호 및 증

ならない。

第二十二条(コンテンツ事業者の講ずる措置)

コンテンツ事業者は、その事業活動を行うに 当たっては、基本理念にのっとり、自律的に その事業を運営し、かつ、その能力を最も有 効に発揮することにより事業の効率化及び高 度化を図るとともに、その有するコンテンツ が広く活用されるようコンテンツの流通の円 滑化に資する措置を講じ、及び国内外におけ るコンテンツに係る知的財産権の侵害に関す る情報の収集その他のその有するコンテンツ の適切な管理の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 う努めるものとする。

2 制作事業者は、そのコンテンツの制作の 事業に従事する者(請負契約等に基づき制作 事業者のために出演その他のコンテンツの制 作に係る役務の提供を行う者を含む。以下こ の項において「制作事業従事者」という。) の職務がその重要性にふさわしい魅力あるも のとなるよう、制作事業従事者の適切な処遇 の確保に努めるものとする。

第四章 行政機関の措置等

第二十三条(関係行政機関等の相互の密接な 連携)

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関する施策の推進に当たっては、コンテンツの 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必要な措置が適 切に講じられるよう、関係行政機関の相互の 密接な連携の下に、これが行われなければな らない。

2 知的財産戦略本部(以下「本部」とい

진이 도모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22조(콘텐츠 사업자가 강구하는 조치)

① 콘텐츠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는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능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함으로써 사업의 효율화 및 고도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보유하는 콘텐츠가 널리 활용되도록 콘텐츠 유통의 원활화에 기여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국내외에서 콘텐츠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그밖의 보유하는 콘텐츠의 적정할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작사업자는 콘텐츠 제작 사업에 종사하는 자(도급계약 등에 기초하여 제작사업자를 위하여 출연 및 그 밖의 콘텐츠의 제작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제작사업종사자"라한다)의 직무가 그 중요성에 어울리는 매력있는 것이 되도록 제작사업종사자의 적절한처우 확보에 노력한다.

제4장 행정기관의 조치 등

제23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상호 밀접한 연계)

- ①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때는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조치가 적절히 강구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상호 밀접한 연계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 ② 지적재산전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う。)及び関係行政機関の長は、知的財産基本法第二十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推進計画 (以下「推進計画」という。)において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関して講じようとする施策の充実が図られるよう、相互に密接な連携を図りながら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十四条(国等によるコンテンツの提供)

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その有する良質なコンテンツが社会全体において利用されることが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資することにかんがみ、広く国民が当該コンテンツを利用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当該コンテンツの積極的な提供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2 独立行政法人(独立行政法人通則法(平成 十一年法律第百三号)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 る独立行政法人をいう。)、特殊法人(法律に より直接に設立された法人又は特別の法律に より特別の設立行為をもって設立された法人 であって、総務省設置法(平成十一年法律第 九十一号)第四条第一項第九号の規定の適用 を受けるものをいう。)、国立大学法人(国立 大学法人法(平成十五年法律第百十二号)第二 条第一項に規定する国立大学法人をいう。) 及び大学共同利用機関法人(同条第三項に規 定する大学共同利用機関法人をいう。)は、 その有する良質なコンテンツを広く国民が利 用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当該コンテンツの 積極的な提供その他の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 う努めるものとする。

第二十五条(国の委託等に係るコンテンツに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적재산기본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에서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강구하고자 하는 시책의 강화가 도모되도록 상호밀접한 연계를 도모하면서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국가 등의 콘텐츠 제공)

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보유하는 양질의 콘텐츠가 사회 전체에서 이용되는 것이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기여함에 비추어 국민이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수 있도록 해당 콘텐츠의 적극적인 제공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② 독립행정법인(「독립행정법인통칙법」 (1999년 법률 제103호)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특수법 인(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또는 특 별법률에 따라 특별 설립행위로 설립된 법 인으로, 「총무성설치법」(1999년 법률 제 91호) 제4조제1항제9호의 규정을 적용 받 는 것을 말한다), 국립대학법인(「국립대학 법인법」(2003년 법률 제112호) 제2조제1 항에서 규정하는 국립대학법인을 말한다) 및 대학공동이용관계법인(같은 조 제3항에 서 규정하는 대학공동이용관계법인을 말한 다)은 보유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국민이 이 용할 수 있도록 해당 콘텐츠의 적극적인 제 공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제25조(국가의 위탁 등과 관련된 콘텐츠에

係る知的財産権の取扱い)

国は、コンテンツの制作を他の者に委託し又は請負は請け負わせるに際して当該委託又は請負に係るコンテンツが有効に活用されることを促進するため、当該コンテンツに係る知的財産権について、次の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場合には、その知的財産権を受託者又は請負者(以下この条において「受託者等」という。)から譲り受けないことができる。

- 一 当該コンテンツに係る知的財産権については、その種類その他の情報を国に報告することを受託者等が約すること。
- 二 国が公共の利益のために特に必要がある としてその理由を明らかにして求める場合に は、無償で当該コンテンツを利用する権利を 国に許諾することを受託者等が約すること。
- 三 当該コンテンツを相当期間活用していないと認められ、かつ、当該コンテンツを相当期間活用していないことについて正当な理由が認められない場合において、国が当該コンテンツの活用を促進するために特に必要があるとしてその理由を明らかにして求めるときは、当該コンテンツを利用する権利を第三者に許諾することを受託者等が約すること。
- 2 前項の規定は、国が資金を提供して他の 法人にコンテンツの制作を行わせ、かつ、当 該法人がその制作の全部又は一部を委託し又 は請け負わせる場合における当該法人とその 制作の受託者等との関係に準用する。
- 3 前項の法人は、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 一項第二号又は第三号の許諾を求めようとす

관한 지적재산권의 취급)

- ① 국가는 콘텐츠의 제작을 다른 자에게 위탁하거나 도급할 때, 해당 위탁 또는 도급과 관련된 콘텐츠가 유효하게 활용되도록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콘텐츠에 관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을 수탁자 또는도급인(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해당 콘텐츠에 관한 지적재산권에 대해 서는 종류 및 그 밖의 정보를 국회에 보고 하는 것을 수탁자 등이 약속할 것
- 2.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하여 이유를 밝혀 요구하는 경우에 는 무상으로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권리를 국가에 허락하는 것을 수탁자 등이 약속할 것
- 3. 해당 콘텐츠를 상당 기간 활용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콘텐츠를 상당 기간 활용하고 있지 아니함에 대하여 정당 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콘텐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 히 필요하다고 하여 이유를 밝혀 요구하는 때는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권리를 제3자 에게 허락하는 것을 수탁자 등이 약속할 것
- ② 전항의 규정은 국가가 자금을 제공하여 다른 법인에게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고, 해당 법인이 제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하거나 도급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제작의 수탁자 등의 관계에 준용한다.
- ③ 전항의 법인은 같은 항에서 준용하는 제 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허락을 요구하고자

るときは、国の要請に応じて行うものとす る。

第二十六条(本部への報告)

本部は、推進計画において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関して講じようとする施策の充実が図られるよう、関係行政機関の長に対し、当該関係行政機関が第九条から第二十条まで及び第二十四条の規定により講じようとする施策又は措置について、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二十七条(推進計画への反映)

本部は、前条の規定に基づく報告の内容について検討を加え、その結果を推進計画において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関して講じようとする施策に十分に反映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附則抄

하는 때는 국가의 요청에 따라 요구한다.

제26조(본부에 대한 보고)

본부는 추진계획에서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강구하고자 하는 시책의 강화가 도모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장에게 해당 관계 행정기관이 제9조부터제20조까지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강구하고자 하는 시책 또는 조치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추진계획에 대한 반영)

본부는 전조의 규정에 기초한 보고의 내용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서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강구하고자 하는 시책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생략